

[별첨 2]

취업보호대상자 등의 가산적용 비율

대 상 별	10% 가점	5% 가점
독립유공자	· 애국지사 본인 · 순국선열 유족 · 등록일 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	· 애국지사 가족 · 등록일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· 장손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
국가유공자	· 국가유공자 본인 · 전몰군경, 순직군경, 4·19혁명사망자, 순직공무원,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	· 국가유공자의 가족 ·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· 전몰·순직 유자녀의 자녀 중 1인
5·18민주유공자	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· 기타 5·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· 5·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	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·18 민주화 운동 희생자의 가족 ·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기타 5.18 민주화 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사망한 5·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
특수임무수행자	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 본인 · 특수임무사망자의 유족 또는 행방불명자의 가족	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· 특수임무부상자·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·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
고엽제후유의증	·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	·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가족

※ 관련 법률: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,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, 「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 9,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

※ 서로 중복될 경우에는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함

※ 취업지원(보호)대상자는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각 시험별 만점의 가산점수(%)로 가산한다.